

서울특별시대기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610
------	-----

2004. 12. 15.
환경수자원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4년 11월 6일, 서울특별시장

나. 회부일자 : 2004년 11월 15일

다. 상정일자 : 서울특별시의회 제27회 정례회

제4차 환경수자원위원회(2004년 12월 15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환경국장 진 익 철)

가. 제안사유

- '99. 3월 우리시는 발전시설 및 소각시설에 대하여 국가기준보다 강화된 질소산화물(NO_2) 배출허용기준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하였으나 액체연료 사용 일반보일러시설은 가정용난방 등과 연계되어 조례적용대상에서 제외됨으로서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고 있으므로
- 액체연료사용 일반보일러시설의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을 발전시설수준(50ppm~100ppm)으로 강화하여 질소산화물의 배출량을 줄이고 대기질을 개선하며 대형 사업장 인근 주민들의 대기환경개선 민원을 해소코자 조례개정안을 상정하였음.

나. 조례 개정안의 내용

- 본 조례의 개정내용은 액체연료 사용 일반보일러 시설의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을 국가기준인 250ppm보다 강화된 내용으로 2006년 7월이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려는 것으로서
 - 시간당 배출가스량이 100,000m³이상인 시설은 2006. 7월부터는 70ppm이하, 2009. 1월부터는 50ppm이하로 하였으며
 - 시간당 배출가스량이 100,000m³미만인 시설은 2008. 1월부터 100ppm 이하로 정하였음.
- 조례의 개정에 따른 적용대상 사업장은 총 23개소로
 - 대형시설인 한국지역난방공사 강남지사 1개소와
 - 아파트 난방시설 9개소 및 공장이 13개소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 김 종 식)

- 동 조례는 서울특별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610호로 2004. 11. 15.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동 조례의 제안사유는 경유 또는 방카씨유 등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아파트단지의 중앙 난방보일러, 한국지역난방공사 강남지사, 또는 산업용의 보일러 등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질을 줄여 인근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고 특히, 환경부기준보다 배출기준을 강화하여 우리 서울시 대기질을 개선코자 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는 경유등 액체연료 보일러 시설의 질소산화물 배출기준을 배출가스량이

100,000m³/시간 이상의 시설인 경우

- 2006. 7. 1일부터 70ppm이하,
- 2009. 1. 1일부터 50ppm이하로 하고,

100,000m³/시간 미만의 시설인 경우

- 2008. 1. 1일부터 100ppm이하로 강화코자 하려는 것임.

〈 배출 허용 기준 〉

다. 액체연료사용시설	적용기간 및 배출허용기준		
	2006년 7월 1일부터	2008년 1월 1일부터	2009년 1월 1일부터
(1) 일반보일러			
(가) 배출가스량 100,000m ³ / 시간 이상인 시설	70(4)ppm이하	-	50(4)ppm이하
(나) 배출가스량 100,000m ³ / 시간 미만인 시설	-	100(4)ppm이하	-

□ 주요 사안별 의견

첫째, 대상보일러 23개소중 지역난방공사 보일러의 배출가스량이 과다하다는 의견임.

- 동 조례 적용대상인 서울시내의 보일러 시설은 총 23개소이며, 이중 난방용 보일러는 한국지역난방공사(강남지사)와 주공아파트 등 10개소, 산업용 보일러는 국도화학 등 13개소임.

따라서 23개 보일러에서 배출되는 질소화합물질 배출량은 총 706톤 (전체배출량의 3.9%)규모이며, 이중 지역난방공사 강남지사 (강남구 일원동 소재)에서 656톤을 배출하여 약 93%를 차지하고 있음.

이는 동일 사업분야의 타지역 난방구역의 열원(노원, 목동열병합, 서울화력 등)은 다음 표와 같이 강화된 조례기준을 적용받고 있으나 23개소의 일반보일러 시설은 조례기준이 없음에 따라 국가기준(법령) 적용으로 과도한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음.

따라서 대기질 악화의 원인은 물론 인근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야기시키고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반보일러 배출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배출시설별 질소산화물 배출기준 및 현황 〉

구 분		일반보일러	발 전 시 설		
		한국지역난방공사강남지사	서울화력발전처	노원열병합설시	목동열병합설시
배출허용기준 (ppm)	국가기준	250	150	150	150
	서울시조례	기준없음	50	80	80
배출농도(ppm)/배출량(톤/년)		183/656	53/263	43/39	35/35

둘째, 보일러 보완시설비에 대한 의견임.

- 조례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내역을 검토한 결과, 한국지역난방공사 강남지사의 보일러 설치 등 소요비용은 약104억원이 소요되며, 이는 가구당 연간 약 25,000원의 추가요인이 됩니다. 또한 주공아파트 등 소형시설의 설치비는 1천만원으로써 가구당 연간 약 10,000원의 추가요인이 있다 할 것임.

따라서 보일러시설 보완에 따른 추가비용은 대기질 개선효과에 비하면 큰 비용이 아니라 판단됨.

셋째, 입법예고·설문 등 적법절차에 대한 의견임.

- 동 개정조례안은 그 동안 입법예고, 영구임대주택 7개단지의 설문조사(대기오염저감 대책 필요 92%, 보일러 방지시설 설치동의 62%) 규제개혁위심의위원회 심의, 조례규칙 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제출되었고, 또한 상위법인 환경정책기본법과 대기환경기본법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된 사항이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됨.

□ 종합 의견

- 동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경유 등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일반 보일러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질을 줄임으로써 인근 지역 주민들의 민원해소는 물론 우리 서울의 대기질을 개선코자 하려는 동 조례안은 때 늦은 감은 있으나 매우 고무적이고 타당하다고 사료됨.

다만, 시행에 앞서 보일러 보완시설에 따른 비용이 수반되므로 관련 기관과 해당 주민들에게 충분한 계도와 홍보를 통하여 또 다른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업무집행과 운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없음

7. 심 사 결 과 :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